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5. 22 선고 2019나53633(본소), 2019나53640(반소) 판결 [(본소)
건물명도(인도) 보증금반환 및 부속물 매수청구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5. 22 선고 2019나53633(본소), 2019나53640(반소) 판결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22 선고 2018가단5067035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1. A 주식회사
2. 주식회사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

담당변호사 이해수

피고(반소원고) 항소인

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제1심 판결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권양희판사 주채광판사 이주현

별지